

심의결과 위안대로그결

의안 번호	회의 차수	회의 일자	제 의 자
제 36 호	제 18차	1986. 7. 10 .	총재 박 성상

의 안 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일부 개정

의결사항 1.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붙임과 같이
일부 개정한다.

2. 실시 일자 : 1986. 7. 10 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72조

제의취지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당행여신이율간의 격차축소를 통해
금리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통화관리의 효율성을
제고하는 한편, 축산자금에 대한 당행 대출이율을 정하기 위해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36/45

참 고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 7 조

①

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 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

- ⑥

(생 략)

한 국 은 행 법 제 72 조

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.

(이 하 생 략)

<붙임>

"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" 일부개정(안)

현행		개정(안)		비고
분	이율	구분	이율	
1. 상업어음 제한인	연 5.0%	1. 상업어음 제한인	연 7.0%	금리인상조정
2. 담보대출		2. 담보대출		
가. 무역어음담보대출	연 5.0%	가. 무역어음담보대출	연 7.0%	금리인상조정
나. 농업, 수산업, 회원사업어음 담보대출(농협 및 수협취급분)	연 3.0%	나. 농업어음담보대출 (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 담보 대출 취급규정 제2조 제1호)	연 3.0%	대출명칭변경
(신설)	(신설)	다. 수산업어음담보대출 (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 담보 대출 취급규정 제2조 제2호)	연 3.0%	
		라. 축산어음담보대출 (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 담보 대출 취급규정 제2조 제3호)	연 5.0%	축산어음담보대출이율 신설
다. - 라. (생략)	(생략)	마. - 바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호제하
(생략)	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